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O비자와 H-1B비자 중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OPT 만기일, 추첨, 서류준비 등 각자 상황 따져야

〈H-1B비자〉 〈O비자〉

문: 작년 5월 뉴욕에 있는 미대를 졸업하고 OPT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데 4월에 접수가 시작되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특기자 비자인 O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 중이다. H-1B 신청과 O비자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적합한지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답: 2020년 회계연도 취업비자인 H-1B 접수 일자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H-1B 접수 준비와 O비자 접수 사이에서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H-1B 비자와 O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르며 각각의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H-1B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비자로 매해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민국은 취업비자 규정의 해석을 까다롭게 적용하므로 인해 직책에 요구되는 업무가 여러 전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면 취업비자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도 좋은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용의하며 대사관에서 비자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도 O비자 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취득하고 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시 이직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이 바로 가능하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승인되는 O비자는 접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 가능한 비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첨을 거쳐 검토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에 비해 접수를 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여 준비를 하는데 있어 취업비자 준비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채용제의를 한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해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른 비자로 모든 신청자가 두 개의 비자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O비자는 예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분야 등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을 입증하면 승인되는 비자이다.

하지만 O비자의 승인이 용이한 분야는 예술 분야로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는 O비자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라면 H-1B 취업비자 신청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래픽, 패션 등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신청자라면 O비자뿐 아니라 H-1B 비자 접수도 가능할 수 있다. O비자 신청이 가능 하려면 흔히들 수상경력이나 언론사에 노출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라면 과거에 일한 회사나 참가했던 프로젝트 등의 인지도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을 입증한다면 수상 경력이나 언론 자료가 없더라도 O비자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각 신청자들의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자의 조건만 보고 신청 가능한 비자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O비자 또는 H-1B비자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OPT 만기일, H-1B 추첨이 파악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서류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떤 비자 신청을 할 지 혹은 두 가지의 비자를 모두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떤 순서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O비자와 H-1B비자 중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OPT 만기일, 추첨, 서류준비 등 각자 상황 따져야

〈H-1B비자〉 〈O비자〉

문: 작년 5월 뉴욕에 있는 미대를 졸업하고 OPT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데 4월에 접수가 시작되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특기자 비자인 O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 중이다. H-1B 신청과 O비자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적합한지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답: 2020년 회계연도 취업비자인 H-1B 접수 일자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H-1B 접수 준비와 O비자 접수 사이에서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H-1B 비자와 O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르며 각각의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H-1B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비자로 매해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민국은 취업비자 규정의 해석을 까다롭게 적용하므로 인해 직책에 요구되는 업무가 여러 전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면 취업비자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도 좋은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용의하며 대사관에서 비자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도 O비자 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취득하고 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시 이직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이 바로 가능하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승인되는 O비자는 접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 가능한 비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첨을 거쳐 검토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에 비해 접수를 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여 준비를 하는데 있어 취업비자 준비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채용제의를 한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해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른 비자로 모든 신청자가 두 개의 비자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O비자는 예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분야 등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을 입증하면 승인되는 비자이다.

하지만 O비자의 승인이 용이한 분야는 예술 분야로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는 O비자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라면 H-1B 취업비자 신청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래픽, 패션 등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신청자라면 O비자뿐 아니라 H-1B 비자 접수도 가능할 수 있다. O비자 신청이 가능 하려면 흔히들 수상경력이나 언론사에 노출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라면 과거에 일한 회사나 참가했던 프로젝트 등의 인지도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을 입증한다면 수상 경력이나 언론 자료가 없더라도 O비자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각 신청자들의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자의 조건만 보고 신청 가능한 비자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O비자 또는 H-1B비자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OPT 만기일, H-1B 추첨이 파악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서류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떤 비자 신청을 할 지 혹은 두 가지의 비자를 모두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떤 순서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